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 안 번 호 | 1431 |
|------------|------|

2016년 12월 2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0월 28일, 이정훈 의원 외 12명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 20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정훈 의원)

1. 제안이유

- 사립초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수업료 징수 방법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이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그 수업료의 산정은 일할 계산으로 함(안 제4조제4항제3호).

나. 안 제4조제4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수업료의 산정을 일할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할로 계산함(안 제6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8일 이정훈 의원 외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1호로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로 전출입할 경우 학교장이 수업료 산정 및 반환을 일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재 공·사립학교의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¹⁾ 및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위임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의 수업료는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립학교 중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부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²⁾

○ 이때 한 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학할 경우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나,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여 징수 및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 조례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 그러나 일반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비싼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학생이 실제로 해당 월의 대부분을 일반고등학교에서 지내더라도 해당 월에 특목고 등에 납부한 비싼 수업료의 상당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³⁾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참고로, 공립유치원,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

- 동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료 자율책정고 간 또는 수업료 자율책정고와 일반고 간의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의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도록 수업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수업료 부담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 제4조제4항제3호에서는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책정고’)와 수업료 면제 및 장학금을 지급받는 일반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 동 조례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도 이와 같은 학교들에 대해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학교 유형별 학생 수 대비 전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은 2013년 2.97%, 2014년 2.57%, 2015년 3.0%로서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학 빈도가 높는데

이와 같이 전학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 학생들은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의 수업료는 자사고에 납부하고,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일반고 수업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한 달 중 하루라도 원소속 학교에 다녔다면 한달치 수업료는 원소속 학교 수업료 기준이 적용됨.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참고.

4)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들 수 있으며,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와 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학교는 각각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들 수 있음.

[표-1] 학교 유형별 학생수 대비 전학생 현황

(단위 : 명, %)

| 연도 | 학생수 (비율) | 총계 | 일반고 | 자사고 | 특목고 | 자공고 | 특성화고 |
|------|-------------|---------|---------|--------|--------|--------|--------|
| 2013 | 전학 | 3,225 | 1,529 | 790 | 85 | 345 | 476 |
| | 전체 | 334,123 | 225,493 | 26,639 | 14,058 | 17,165 | 50,768 |
| | 비율 | 0.97 | 0.68 | 2.97 | 0.60 | 2.01 | 0.94 |
| 2014 | 전학 | 2,811 | 1,324 | 662 | 82 | 165 | 578 |
| | 전체 | 320,398 | 215,311 | 25,779 | 13,452 | 16,164 | 49,692 |
| | 비율 | 0.88 | 0.61 | 2.57 | 0.61 | 1.02 | 1.16 |
| 2015 | 전학 | 2,894 | 1,305 | 786 | 79 | 96 | 628 |
| | 전체 | 308,306 | 204,931 | 26,184 | 12,904 | 15,177 | 49,110 |
| | 비율 | 0.94 | 0.64 | 3.00 | 0.61 | 0.63 | 1.28 |

- 한편 수업료의 경우 일반고에 재학하는 학생의 월 수업료는 12만 900원인 반면, 자사고의 학생들은 월 평균 36만 6,639원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율채정고의 학생이 일반고로 3월 2일에 전학할 경우,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월할 계산의 방법에 따르면 3월분 수업료 36만 6,639원을 모두 부담하지만,

동 조례안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으로 계산시 1일분 수업료 11,827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분에 대한 수업료 35만 4,812원을 반환받고, 일반고에 11만 7,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월할 계산시보다 23만 7,812원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고에서 자율채정고로 전학시에는 3월분 수업료 12만 900원 중 3,900원을 제외한 11만 7,000원을 반환받고 자율채정고에 30일분 수업료 35만 4,812원을 납부함으로써 23만 7,812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업료를 월할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더욱 부합하고 공정한 납부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특히 당초 자사고등의 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의 자율책정고가 일반고에 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 바,

동 조례안과 같이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수혜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업료를 실제 재학일수에 따라 징수하도록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자율책정고의 학생들이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학교간 수업료 차액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 학교급별 | 구 분 | 수업료 | 입학금 | 비고 |
|----------------|-----|-----------|--------|----|
| 유치원 (공립) | 년 액 | 396,000 | 5,200 | |
| | 분기액 | 99,000 | | |
| | 월 액 | 33,000 | | |
| 고등학교 (공.사립) | 년 액 | 1,450,800 | 14,100 | |
| | 분기액 | 362,700 | |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년 액 | 135,000 | 5,300 | |
| | 반기액 | 67,500 | | |

[표-3] 수업료 비교 현황

(기준 ; 2016학년도)

| 징수방법 | 일반고 월 수업료(A) | 자사고 월 수업료(B) | 학부모 부담액 비교 | | 비고 |
|---------------|-----------------|------------------|--------------------------------|---------------------------------|--------------------|
| | | |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학시 |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시 | |
| 현행 (월할계산) | 120,900원 | 366,639원 (평균) | 120,900원 납부 | 366,639원 납부 | 3월 2일 전출입 가정 |
| 개선안 (일할계산) | | | 일반고 : 3,900원 자사고 : 354,812원 | 일반고 : 117,000원 자사고 : 11,827원 | |
| 비고 | | | 237,812원 많이 납부 | 237,812원 적게 납부 | 3월 부담액 |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가 제3호의 경우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조문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3호의 서두에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교육재정과-24399),

안 제4조제4항제3호가 자체적으로 단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조문의 의미 및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한다.

3. 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징수방법) ①~③ (생 략) ④ (생략) 1.~2. (생 략) <u>< 신 설 ></u></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생 략) ② <u>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u>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p> | <p>제4조(징수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u></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조제4항제2호의</u>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 <u>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u></p> |